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981
------	------

2020. 11. 23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10월 16일, 최선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- 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】
 -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(2020.11.23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조인동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되어 있으나, 민간위탁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‘공문서’로 ‘진정성립이 추정’되어 공증이 불필요함.
- 감사원 감사(2020.5) 시 민간위탁조례의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개정 지도하라는 권고가 있었고,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

조례의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시달함(2020.8.).

- 조례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공증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1항의 민간위탁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공증의무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위

- 행정자치부(現 행정안전부)는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제도를 확산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 표준조례안(이하 “표준안”)을 통보하였음(1998.12).
- 당시 표준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받도록 하였고, 이후 표준안을 참고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공증을 받아 왔음.
- 하지만, 감사원이 2020년 대구·경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‘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실태조사’에서 협약서에 대한 공증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며,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으로 권고하였음.

< 감사원 감사결과 ('20.5.) >

- ▶ 민간위탁협약서는 '공문서'로 '진정성립 추정'되어 공증 불필요
- ▶ 민간위탁조례의 제정 목적인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 간소화에 부합하지 않음
- ▶ 공증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 없이 사무마다 비용주체가 달라 수탁기관 간 형평성 훼손

-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상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'민간위탁 협력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' 을 송부하였음(2020.8.31.).

다.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 현황과 문제점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1항은 시장이 사무를 수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통상 '공증' 은 사실관계나 계약 등에 관련하여 당사자가 공증 대상인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, 강제 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'공정증서 인증' 과 각 당사자의 서명 사실을 확인해 주는 '사서증서 인증' 이 있음.
-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'사서증서 인증' 으로 내용의 진정성이 담보되지는 않으나, 서울시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 「민사소송법」¹⁾에 의해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공증은 불필

요함.

- 서울시는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있어 공증의무를 폐지하여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낮음.
- 최근 3년간 서울시는 349건의 협약서를 공증 받으면서 공증비용으로 약 7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,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증비용 부담 주체가 일관성 없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.

<최근 3년간 서울시 민간위탁협약서 공증 현황>

구 분		2018년		2019년		2020년 9월	
		건수(개)	금액(천원)	건수(개)	금액(천원)	건수(개)	금액(천원)
총 계		88	17,786	112	25,717	149	35,091
부담 주체 (건수/ 금액)	서울 시	42	4,773	60	6,898	70개	13,546
	수탁 기관	22	2,315	27	7,639	53개	7,753
	공동	24	10,698	25	11,180	26개	13,792

-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협약서 인증이라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증 의무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1) 「민사소송법」 제356조(공문서의 진정의 추정)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7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8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최 선, 이은주, 이영실, 문병훈,
박상구, 송재혁, 고병국, 김제리,
한기영, 전병주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되어 있으나, 민간위탁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‘공문서’로 ‘진정성립이 추정’되어 공증이 불필요함.
- 감사원 감사(’20.5.) 시 민간위탁조례의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개정 지도 하라는 권고가 있었고,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조례의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시달함(’20.8.).
- 조례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공증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1항의 민간위탁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협약체결 등)</p> <p>① <u>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1조(협약체결 등)</p> <p>① <u>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